

#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에 관한 연구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인의 해외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6,150만 명, 2020년 1억 5,900만 명으로 세계 관광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의 해외관광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중국인 해외관광객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아울러 2010년 상해 EXPO의 개최를 전후하여 중국은 세계적인 아웃바운드 관광대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중간 방문객 격차가 1:4.6으로 심각한 편중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때이며 이에 중국인 방문에 제한이 되는 비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2009년부터 단기 관광방문객에 대한 비자면제 확대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비자발급 서류의 간소화 및 영사관할 구역의 완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비자발급과 관련된 인적서비스의 개선 또한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적정 영사의 확보와 비자발급 업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무사증제도, 비자발급 간소화

## I. 서 론

### 1.1 연구배경

최근 모든 국가는 환경적 요인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까지 5년 연속 두자리수의 폭넓은 성장을 거듭한 중국의 GDP규모가 2003~2007년 5년 사이에 무려 2배로 확대되는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위안화 기준으로 중국의 지난해 GDP총액은 24조6600억 위안(약 3206조원)을 기록해 2002년 12조300억 위안의 2배가 넘었다. 2003~2007년 5년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0.6%에 달했고 지난 2007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2조1738억 달러(약 2054조원)로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인 독일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무역흑자는 304억 달러(2002년)에서 2622억 달러(2007

년)로 5년 만에 무려 8.6배가량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도 2864억 달러(2002년)에서 1조5282억 달러로 수직 상승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05년 3,100만 명이던 해외관광객이 2006년 3,450만 명으로 급성장한 중국은 아시아 최고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해외관광객의 지출규모도 2004-2006년 2년 사이 평균 17.1%가 성장해 \$24 억을 넘어섰다. UNWTO는 중국 해외관광객 규모를 2007년에는 4,390만 명, 2010년 6,150만 명, 2020년에는 1억5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 국가는 경쟁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중에 있으며 특히 북경올림픽, 상해 Expo 이후 중국의 해외관광 자유화 확대 예상에 따라 중국 관광객들이 쉽게 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미국방문관광객 촉진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미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인가

하는 중·미간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고, 유럽도 2004년 9월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 30개국에서 아웃바운드 지정여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단체관광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2008년 1월부터는 체코, 헝가리를 포함한 9개 국가가 “EU협정”에 포함되면서, 중국인들은 비자 하나로 유럽 24개국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어 중국인들의 유럽여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중국은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세계 관광시장의 주류로 등장하였으며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중국방문 한국인은 413만 명으로 2002년 이후 연평균 24.4% 증가한 반면,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90.2만 명으로 연평균 13.7% 증가에 그쳐서 한중 방문객의 편중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실정이다.

〈표 1〉 연도별 한중간 상호 방문객 수

년도	방중 한국인	방한 중국인
2002년	1,722,128	539,440
2003년	1,945,469	513,236
2004년	2,844,862	627,429
2005년	3,545,341	709,836
2006년	4,129,818	902,000
평균증가율(%)	0.244	0.137

자료 : 관광수요예측, 한국관광공사, 2006. 12.

비록 방한 중국인이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EXPO 효과를 고려하여 약간 증가된다 하더라도, 2010년 132.1만 명, 2012년 165.8만 명이 방한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방중 한국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

가율인 17.6%를 적용하여 추정하면 2010년에는 752.7만 명, 2012년 1,040.9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한중간 방문객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2006년도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수지적자 \$85억 중 대중국 적자가 약 \$20억로 추정되

고 있어 전체 관광수지 적자의 2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현재의 방문객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2010년 대 중국 관광수지 적자는 약 \$40.4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2012년에는 관광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되어 \$58.4 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대 중국 관광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10년 까지 점진적으로 항공운송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한 이후 양국 간 취항지점의 증대와 더불어 양국 항공사에 의한 수송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한·중 항공자유화 실시에 따른 한중간 항공편수 및 항공좌석의 증가가 중국인 방한 여행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방한 중국인 증가가 미미한 반면 방중 한국인 증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1.2 문제 제기

이런 위기 가운데 중국인의 한국 방문객수가 상대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건대 그 중 하나

로 복잡하고 엄격한 비자발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한국 방문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복잡한 신청서류와 신청절차가 중국인의 한국 방문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율이 13.5%인데 비하여 한국의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율이 0.9%에 불과하다. 높은 거부율에 따른 한국 이미지 악화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자제도 완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발생 우려와 불법체류발생시 영사 평가에 반영되는 관계로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방한 비자발급 거부율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는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주와 프랑스도 5%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국관광객들의 국내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한 비자발급 조건 및 절차, 서류, 비용 등 발급 절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자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중국비자 완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싶다. 즉, 수시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1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비자를 완화 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인 불법체류자의 범죄행위와 같은 사회문제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중국비자 완화에 대한 효과는 크게 중국관광객 증가에 의한 관광산업 파급 효과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에 따른 국내 생산성 기여 및 실업 유발에 의한 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II. 중국인 해외 관광시장 분석

### 2.1 중국인 해외여행 동향

UNWT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여행객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3,452만 명으로 2001년 대비 184.5%가 증가하였으며, 10년간 매년 평균 24%의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여 2007년에는 7월까지 2,252만 명에 달했고 2007년 말에는 4,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관광 지출은 2005년 \$2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 관광지출 규모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다<sup>1)</sup>. 중국인들의 주요 여행목적지는 홍콩/마카오로 전체 여행의 71%가 이 두 곳을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홍콩 여행객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마카오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국인들의 카지노 선호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여행은 각각 3.1%와 3.7%로 나타나 큰 변동은 없었고, 유럽으로의 출국이 감소한 반면,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으로의 여행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1)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7

2) 중국인 해외 출국 동향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7	2004	2005	2006	2007.7
총계	1213.31	1660.23	2202.19	2885.29	3102.63	3,452	2,252	100	100	100	100
아시아계	1008.97	1419.87	1794.00	2582.05	2775.33	3,026	1,962	89.5	89.5	87.7	87.1
홍콩	532.04	777.10	931.01	1300.16	1352.54	1,433	886	45.1	43.6	41.5	39.4
마카오	180.04	278.31	479.06	749.05	847.924	989	692	26.0	27.3	28.7	30.7
대만	10.54	11.25	12.65	14.45	15.9938	21	14	0.5	0.5	0.6	0.6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크게 여권 유형에 따라 공적여행<sup>3)</sup>과 사적여행으로 구분된다.

사적여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국하여 정착할 때, 해외로 친척이나 친구 방문이나 친구를 만날 때, 재산 상속, 자비 유학, 취업 및 순수관광 등이 있다. 최근에는 관광목적으로 개방된 국가·지역으로 관광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수한 사적 여권인 관광여권을 만들었으며, 이 여권은 오직 관광단체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에 출입국을 1회 허용한다.

1979년 이전까지 사적 해외여행자 수는 매우 적었으며,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사적 여권을 신청한 사람이 날로 증가하여 1986년까지 7년간 사적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한 중국인의 수가 35만 명이 되었고, 그 목적은 친척 방문으로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사적 해외여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는

일본	60.85	76.01	80.47	102.13	111.697	128	84	3.5	3.6	3.7	3.7
한국	45.94	55.14	55.91	69.70	84.3264	110	70	2.4	2.7	3.2	3.1
북한	17.20	24.79	17.57	29.57	24.0607	13	5	1.0	0.8	0.4	0.2
몽고	5.96	9.18	6.48	12.25	18.2527	12	8	0.4	0.6	0.3	0.4
싱가포르	28.14	28.92	26.21	42.93	47.7198	56	38	1.5	1.5	1.6	1.7
필리핀	5.13	6.82	7.29	10.22	11.9104	14	9	0.4	0.4	0.4	0.4
말레이시아	12.40	23.10	24.41	33.72	35.4696	44	32	1.2	1.1	1.3	1.4
태국	65.24	68.87	52.78	68.25	59.5504	77	41	2.4	1.9	2.2	1.8
인도네시아	2.47	4.53	5.69	8.47	8.6177	11	9	0.3	0.3	0.3	0.4
카자흐스탄	3.83	4.94	5.74	9.11	9.7422	13	9	0.3	0.3	0.4	0.4
베트남					84.4999	51	28	0.0	2.7	1.5	1.2
미주계	58.51	61.82	53.07	68.02	79.8739	93	57	<b>2.4</b>	<b>2.6</b>	<b>2.7</b>	<b>2.5</b>
미국	41.81	41.86	34.56	44.39	53.1991	64	40	1.5	1.7	1.8	1.8
캐나다	13.50	14.79	15.02	18.36	20.7167	22	13	0.6	0.7	0.6	0.6
유럽계	117.71	139.77	135.11	180.74	181.014	190	113	<b>6.3</b>	<b>5.8</b>	<b>5.5</b>	<b>5.0</b>
독일	13.84	16.57	16.52	22.29	22.9749	26	15	0.8	0.7	0.7	0.7
프랑스	11.44	13.67	13.54	20.15	20.1601	21	11	0.7	0.6	0.6	0.5
영국	8.84	12.80	13.41	17.76	18.4032	22	13	0.6	0.6	0.6	0.6
러시아	60.70	69.11	66.12	80.96	77.0477	72	41	2.8	2.5	2.1	1.8
오세아니아주계	20.97	26.53	26.52	36.08	40.9347	45	31	<b>1.3</b>	<b>1.3</b>	<b>1.3</b>	<b>1.4</b>
호주	16.63	19.94	19.76	27.41	31.7979	34	25	0.9	1.0	1.0	1.1
뉴질랜드	3.86	5.87	5.94	6.18	5.7548	6	4	0.2	0.2	0.2	0.2
아프리카계	5.86	7.44	8.94	11.54	14.3629	19	15	<b>0.4</b>	<b>0.5</b>	<b>0.6</b>	<b>0.7</b>
기타	1.28	5.11	4.55	6.85	11.1178	79	74	0.2	0.4	2.3	3.3

3) 공적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가 외국에 파견하여 경제, 기술, 문화와 교육, 위생 등 원조(지원) 프로젝트에 종사할 때, 국유기업이 경제 및 무역활동에 종사할 때, 각종 국제회의 참가 및 중국과 외국의 학술단체나 교육 기구가 상호 방문할 때, 협의에 따라 외국에 가서 유학, 연수, 방문학자 및 가르칠 때, 중외합자기업 종사자가 해당 기업 사무에 의해 외국을 방문할 때, 국외 공사 담당 및 외국 파견 노무, 민간 조직이 외국을 방문할 때, 뉴스(언론) 기구가 외국을 방문할 때, 출국하여 공연하거나 전람회를 열 때,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때, 민항 탑승원, 국제 열차 및 국제 우편물을 관련하여 종사할 때, 정부 또는 국유기업의 국외 상주 기구 등의 경우 공적여행으로 구분된다.

사적여행자의 비중이 50%를 초과하였고, 2004년엔 79.7%를 차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해외관광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 구조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인의 해외여행 동향을 살펴보면, 관광목적지 국가·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여행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이 해외여행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상품 가격인하와 더불어 중국인 여행자의 범위가 고소득층으로부터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숙박, 교통, 음식 등 필수적인 소비 외에 쇼핑이 국외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인의 해외소비 수준은 일본, 한국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가격보다는 유명여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GDP는 1조 3,651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중국

의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 수요를 촉진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올림픽 및 2010년 상해 국제 박람회 특수로 인한 경기 진작으로 기존의 연간 7~8% 경제 성장률에서 0.3~0.4%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sup>4)</sup>.

중국 전체인구의 5%인 6,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여행 가능인구는 점차 휴가형 관광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중국의 몇몇 대형 여행사들이 연합하여 휴가도서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비교적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또한 골프나 스키를 즐기려 외국으로 나가는 휴가형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 대회 참관, 음악공연, 박람회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적인 문화관광 상품들도 개발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중국민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국제 규모의 대회에 참관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4)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포스트 올림픽 효과 등으로 2010년 중국의 GDP 규모는 2조 달러로 예상되며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중산층 규모 확대로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늘고 있다. 즉, 중국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 이상 단지 유람 단체관광이 아니라 중·고층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개성 있는 상품이며 이것이 시장 수요의 추세이다.

## 2.2 중국인 해외여행관련 정책

### 2.2.1 중국인 해외여행 관리 원칙

중국인 해외여행 관리 원칙을 살펴보면 중국 3대 관광시장 발전의 기본 방침은 입국관광은 크게 발전시키고, 국내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해외관광을 적절하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해외관광은 1983년 홍콩에 대한 친지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친지 방문은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해외 친지방문의 자유화는 중국에서 해외관광을 시험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였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은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잠정관리방법」을 제정하여 해외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규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중국정부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해외관광을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상의 중국 해외

관광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WTO의 규정에 따라 해외관광의 관리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잠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2002년 7월 1일 「중국공민 출국관광 관리방법」을 공표하였고, 해외관광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자비(自費)관광이란 표현을 삭제하였고, 분배관리제도와 심사·증명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여행사 일괄적 환전에서 자체 환전을 허용하고, 환전 한도액을 3,000~5,000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중국정부의 해외여행 시장 관리에 대한 세 가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으로”라는 방침은 해외여행이 주로 여행사 조직의 관광단체 형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경영권이 있는 여행사가 조직하는 3 명 이상의 관광단체에 참가해야 하며, 반드시 단체 전체가 출입국하고 관광활동은 인솔자의 인솔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계획적으로”라는 방침은 관광

발전의 전체 수요가 국가 외화관리의 동태에 따라 상응하는 계획 조치를 취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바운드 여행객수와 획득한 외화수입, 국내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여행의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해외여행의 총량 규모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산업의 외화 수입 증대가 지출보다 크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통제적으로”라는 방침은 경영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특히 경영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해외관광에 대하여 총량 통제와 할당량 관리를 실시하고, 여행사의 해외관광 어부경영 특별 허가에 대한 심사비준과 수량 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 방침에 근거하여 해외관광의 관리 조치에 있어 국가여유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정하였다. 첫째, 입·출계 연계의 원칙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경영업적을 심사비준의 주요 근거로 한다. 둘째, 지역의 합리적 분포 원칙으로 입출 연계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전국의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최소한 1개 이상의 단체 조직 여행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점진적 진보 원칙으로 관광시장 발전의 수요에 의거하여 단체 조직 여행사 수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동태적 관리 원칙으로 단체 조직 여행사 심사비준은 종신제를 하지 않으며, 여행사 업무의 연 1회 정기 감사를 통해 조정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기존의 해외관광을 적절한 속도로 발전시키는 ‘제한적 정책’에서 시장경제의 논리와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외관광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는 ‘규범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부응하여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서 ‘해외관광 발전 규범화’ 정책을 공표하게 되었다.

## 2.2.2 관광목적지 지정제도

중국민의 해외관광 목적지로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지정제도인 ADS(Approved Destination System)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997년 관련 방침에 따르면, “출국관광 목적지 국가와 지역은 국가여유국이 외교부와 공안부를 회동하여 제

출하고 보고하여 국무원이 심사 비준 한다”라고 제시하였고 이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2002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2조) 출국관광의 목적지 국가는 국무원 관광 행정 무허가 국무원 관련 부처를 회동하여 제출하고 보고하여 국무원이 심사 비준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도 국무원 관광행정 부처가 공포한 출국관광 목적지 국가 이외의 국가로 가는 관광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허가되지 않은 국가에 가서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 임시적인 전문관광을 조직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관광 행정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국 정부 출경관광 시장의 흐름을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ADS 협정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다. 첫째, 상대 국가가 중국의 입국관광시장이어야 한다. 즉, 상대 국가의 국민들이 중국으로 관광 하러 오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어야 한다. 셋째, 상대 국가의 관광 자원이 흡인력이 있어야 하며, 중국인 관광객에 적합한 접대 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법률, 행정 등의 방면에 있어 차별하거나 제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관광목적지로서 양호한 진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베이징, 상하이, 티엔진, 충칭, 산둥, 안후이, 지양쑤, 광동, 산시 지역에서 먼저 허용되었으며 2000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부터 중국은 관광목적지의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4개국, 2002년에 5개국, 그리고 2003년에는 9개국이 관광목적지로서 개방되었다. 특히 2004년에 개방 국가의 지정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 해 9월에 영국을 제외한 EU 국가가 모두 중국의 출경관광목적지로서 개방되었으며, 12월에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9개 국가가 개방되었다. 2005년에는 관광목적지의 개방 범위가 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주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개방되었다. 중국 공민의 출경 관광 목적지 국가로 개방된 곳은 2006년 3월 현재 81개 국가·지역에 달한다.

### 2.2.3 외환소지 통제 및 귀국보증금 제도

중국은 해외여행 외환소지 한도액을 직접적으로 여행상품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외환 소지 한도액은

US\$ 5,000이나, 환전 가능액은 \$5,000에서 자국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관광목적지 여행사에 지불하는 1인당 지상비를 제외한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지상비는 다음과 같이 상품가격별로 일정하게 책정된다.

〈표 2〉 1인당 지상비

여행상품 가격	1인당 지상비	환전 가능액
4000위안 이하	US \$300	US \$4,700
4000~6,000위안 이하	US \$500	US \$4,500
6,000~10,000위안 이하	US \$800	US \$4,200
10,000위안 이상	US \$1,000	US \$4000

〈표 3〉 북경지역에서의 목적지별 보증금

한국	3~5만 위안
일본	
유럽	3~6만 위안
호주	
동남아	보증금 없음

또한 단체 해외여행의 경우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귀국보증금 제도 실시하고 있고, 현금 직접 예치, 통장예치, 타인 보증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대련, 심양이 타 지역보다 보증금액이 높은 이유는 조선족 거주지로서 타 지역 보다 단체 여행 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4〉 한국행 단체의 지역별 보증금

북경	3~5만 위안
대련	
심양	7~8만 위안
청도	5~6만 위안
상해	3만 위안

### 2.2.4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사 제도

신청수속은 여행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광부처에 신청서를 제출, 30일 이내에 여행사의 자격 심사하고 이를 중국 국가여유국에 비준을 의뢰하며 조건은 국제여행사 자격 취득한 1년이 경과되고, 인바운드 모객실적 우수하며, 운영 기간 동안 중대 위법

사항 및 서비스 문제가 없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중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528개. 한국행 아웃바운드 중국 내 6대 여행사가 종전까지 대부분 취급하였으나, 비자발급 영사관이 확대됨에 따라 북경 소재 여행사 이외에도 타 지역의 여행사도 취급하고 있다.

### III. 방한 비자제도 분석

#### 3.1 중국인 방한 비자제도

##### 3.1.1 중국인 방한비자 유형

〈표 5〉 중국인 비자발급 유형

체류기간에 따른 유형	체류목적에 따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비자와 장기비자로 구분</li> <li>- 단기비자의 경우, 90일 미만 체류 원칙 (비자타입 B와 C 적용 경우)</li> <li>- 장기비자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 원칙 (비자타입 B와 C 이외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목적에 따라 비자종류를 상세히 구분 (30개)</li> <li>-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소지 의무화</li> </ul>

〈표 6〉 중국인 관광객 관련 비자

단기상용 (C-2)	단기 종합(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외국 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li> <li>-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 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li> <li>- 개별관광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5인 이상 단체관광은 원칙적으로 단체비자를 신청해야 함) 발급하는 비자</li> <li>- 단체관광 : 한·중 양국이 각각 지정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초청 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발급하는 비자</li> </ul>

### 3.1.2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관련 현행 비자 정책

#### 3.1.2.1 중국인 제주도 무사증입국<sup>5)</sup>

전담여행사, 제주도지사, 관광협회장의 초청을 받은 중국인 5인 이상 단체 관광객, 외교·공무(公務護照)여권소지 중국인 (해외공무출장증명서 소지), 인공여권 (因公普通護照)을 소지하고 과거 1회 이상 출입국한 중국인, 인사여권 (因私普通護照)을 소지하고 과거 3회 이상 출입국한 중국인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

#### 3.1.2.2 선박이용 중국인 복수 무사증 입국 제도 실시<sup>6)</sup> (2005. 09. 26)

한-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빈번

히 입·출국하는 중국인의 비자발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재외공관의 사증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상 검증된 자에 대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6개월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사증 면제 조치된 자는 지정노선에 한해 월 4회 한도 내에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매 입국 시 최장 15일간 체류가능하다.

#### 3.1.2.3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제도

중국 초·중·고교생으로 5인 이상 청소년 수학여행단체의 경우 주중한국 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으면 한국 입국 시 입국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무사증으로 입국하도록 한다.

5)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후 1998년 15,100명의 중국인 방문객에서 2006년 142,9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연도별 중국관광객 제주 입도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5월
중국인 (성장률)	15.1 (198)	46.2 (205)	57.2 (23.8)	71.7 (25.2)	92.8 (29.5)	69.7 (-25)	101.2 (45.3)	115.2 (13.8)	142.9 (24.1)	54.6 (23.6)
전체외국인 (성장률)	223.7 (21.3)	247.0 (10.4)	288.4 (16.8)	290.1 (0.6)	289.5 (-0.2)	221.0 (-24.3)	329.2 (49.0)	78.7 (15.0)	460.4 (21.6)	171.6 (9.3)

\*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통계(전체외국인에는 교포 포함)

6)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과거1년 이내 단기시증(C-2 또는 C-3)을 소지하고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하여 동일한 출입국 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 ② 해당 선박의 출항지가 속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③ 1년 이상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④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3.1.2.4 국경통과 무사증 통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비자(영주권, 재입국허가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한국행 직행노선을 이용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자로 동 국가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등의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

유럽 30개 국가<sup>7)</sup>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한국행 직행노선을 이용하여 한국을 경유하고 예약 완료된 연결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30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입국하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했던 자중 국내 불법 체류사실이나 범법사실이 없는 경우 관광통과 자격의 무사증 입국을 허가한다.

### 3.1.2.5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sup>8)</sup>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던 복수사증 발급 권한을 중국 주재 공관장에게 위임하여 1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 3.1.3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중국인 관광객 전담여행사 제도를 채택하여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한다. 또한 전담여행사는 무단 이탈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제도와 중국 단체 관광객의 실종, 소재불명, 불법체류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측 인바운드여행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해당여행사에 의한 중국 단체관광의 취급을 정지시키는 벌점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다.

7) 유럽 30개 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8) - 한국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영사관원과 동반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3년 복수사증  
 - 권한있는 당국, 무역, 민간항공, 해운, 운수, 통신, 금융 또는 관광에 관계하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한국주재 사무소의 직원 및 동반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2년 복수사증  
 - 현행 공기업 관리자 이상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상용시증으로 5회 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기업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의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과 연간 교역액 3만불 이상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 상용시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 기업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사기업의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체류기간 30일 이하의 1년 복수사증

### 3.2 주요국가 중국인 비자 정책

#### 3.2.1 일본

일본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4년 비자제도 개선 및 중국인 입국 심사 수속 원활화 방안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2004년에 방일 수학여행 학생 및 수학여행 인솔자인 교직원에 대한 비자 수수료 및 수학여행 학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단체관광비자 발급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하였다.

#### 3.2.2 태국

여행사의 선발을 통한 후, 태국의 비자 성공률은 100%에 가까우며 비자거부의 사례는 매우 적다. 태국에서는 공무여권이나 특수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중국인 우대정책으로 착지비자(선박편을 제외)를 활용하는 등 중국인이 태국을 방문할 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 공무 여권,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가 면제되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여권을 소지한 자는 무비자로 30일간 체

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2.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관광비자가 단체비자와 개인비자로 나뉘어 있지 않고 개인관광비자로만 되어 있으며, 국경통과 비자면제와 함께 특수여권 소지자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착지비자를 활용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20시간의 국경통과 비자면제를 제공하고 있고, 여객선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국경을 통과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여권을 소지한 자는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2.4 싱가포르

중국인이 싱가포르를 단체관광비자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개인관광비자로 방문할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하며, 단기비즈니스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여권, 사진에 초청서를 첨부해야한다. 중국인 입국의 경

우, 여행사의 선발을 통한 후 비자 성공률은 100%에 가까우며 비자 거부는 거의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국경통과 비자면제, 공무여권이나 특수 여권 소지자의 비자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Visa 국제선용카드(골드카드 또는 플래티늄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Visa 국제신용카드의 복사본, 유효여권, 최근의 거래장부 원본과 지정 여행사에서 Visa 카드로 거래한 영수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싱가포르 2년 복수왕복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및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여권을 소지한 자는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현지 도착 후 국경을 통과하고자 하는 중국 관광객이 만약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6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유효한 비자 또는 장기통행증 및 96시간 내에 국경을 떠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싱가포르에서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착지 자격통과 96시간의 특별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이민국과 등기국은 중국국민이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것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비자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싱가포르 관광국 상해사무소에 의하면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인관광, 비즈니스 VISA를 종전 업무시간 14일에서 3일내에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단체관광 및 개인 관광객도 14일간의 단체관광 복수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관광의 입국 보증금도 종전 인민폐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 중국국민의 싱가포르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15개 도시 상주 시민의 “복수 관광비자 편의”, 5개 도시 시민의 “관광비자편의”와 “96시간 특허 경과 노비자”등의 정책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5년 9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중국인은 50만명을 넘어 전년 동기대비 36%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 3.2.5 호주

호주는 중국인이 여행사의 선발 후 단체관광비자의 성공률이 높아 거의 95%정도에 달하며, 개인관광비자의 성공률도 80% 정도로 높다. Visa국

제신용카드와 플래티늄 신용카드를 소지한 관광객은 676비자를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 3.2.6 미국

중국인의 미국여행비자 취득이 어려워 평소 10명이 신청하면 6명이 거부되는 수준으로, 2005년 중국인 미국 여행자수가 23만명인데 반해 유럽 여행자수는 25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LA시는 2006년에 북경, 상해 및 광주를 담당하는 북경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LA시장은 만약 미국이 중국인 개별비자를 개방한다면 LA 방문 중국인은 최소 50~100% 늘어나 LA시 북경사무실은 2007-2008년에 LA방문 중국인이 전년대비 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쇼핑, 숙박, 교통 등 다방면에 걸쳐 수입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방문관광객 촉진을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미간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 IV. 방한 중국인 비자제도 개선과제

비자 발급 간소화를 통한 입국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입국자의 여행행태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현안 문제인 비자발급 간소화는 입국자 증가를 유도하지만 동시에 불법체류자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으로 입국자 유형별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비자발급 간소화는 비자발급 유형의 확대 개선과 발급규제의 개선으로 구분하겠다.

### 4.1 비자발급 유형 확대

현재 단수 사증위주의 비자발급 유형을 무사증, 복수사증, 인터넷 사증 형태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무사증 발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경통과 무비자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행객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수사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행사를 지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자신청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4.1.1 무사증 확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실시를 확대하여 방한 관광객이 증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 및 공무여권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 시점부터 중국 정부에 의해 신분확인된 것으로 비자면제를 통하여 방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베트남 등에서 실시중이다. 이 경우 중국 공무원 대상의 인센티브 관광 등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공무원의 한중 교류확대를 통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입국하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했던 자 중 국내 불법 체류사실이나 범법사실이 없는 수시방문 중국인을 대상으로 관광통과 자격의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 무비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미 단체 관광객을 제외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빈번한 입출국을 하는 중국인에게 적용하는 복수 무비자 제도<sup>9)</sup>를 항공이용 중국인에게도 확대한다.

나아가 대만 방문 중국인 중 대륙 주민대만왕래통행증 및 대만지역출입국허가증을 소지한 국경통과 중국인에게 무비자를 확대하여 대만 방문 중국인의 국내 방문을 유도한다. 중국과 대만간의 직항이 없어 중국인의 대만 방문은 홍콩 및 한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중국인 대만 방문자수는 20.7만명(2006년)으로 북경 및 동북부 지역의 경우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륙주민대만왕래통행증 및 대만지역출입국허가증은 중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지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불법체류의 유인이거나 가능성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9) 한·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입·출국하는 중국인 중에서 해당 선박의 출항지에 주소를 두고 6개월간 거주하고, 2회 이상 선박을 이용하여 동일한 출입국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에게 복수 무비자 적용 (2005. 9. 26)

#### 4.1.2 복수사증 발급 확대

일정 사증의 자격을 가진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여 방한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다<sup>10)</sup>. 한 국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및 그 가족 등 A-1, A-3 비자 요건에 해당하는 중국인, 선박이용 입국 중국인에만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시방문자(5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실적이 없는 자), 중국 단체 관광객 출국시 CIQ안에 들어가서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여행사 직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입국하고, 국내 불법체류사실이나 범법사실이 없는 수시 방문 중국인 경우 복수사증 발급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수시 입국자 복수 비자 발급도 선박을 이용한 수시 입국자와 동일하게 복수비자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며 또한 국제 신용카드 소지자(골드카드 또는 플래티늄

카드)와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 복수사증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4.1.3 인터넷 사증 도입

비자신청 자격을 갖는 일정한 여행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인터넷 비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탈자에 대한 현실적인 별칙제도 등 이탈자 감소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4.2 비자발급 규제 개선

비자발급과 관련된 민원 및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한 비자발급을 통하여 방한 중국인 유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C2/C3 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비자 발급율을 높이고, 발

10) 주요국 복수사증 자격요건

- 일본 : 의사, 간호사가 환자를 호송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방문해야 할 경우 1년 복수왕복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인이 이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두번째 신청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왕복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싱가포르 : Visa국제신용카드 (골드카드 또는 플래티늄카드)를 소지한 관광객은 visa국제신용카드 (골드카드 또는 플래티늄카드)의 복사본, 유호 여권, 최근의 거래장부 원본과 지정 여행사에서 Visa카드로 거래한 영수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싱가포르2년 복수왕복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 Visa국제신용카드와 플래티늄 신용카드를 소지한 관광객은 676비자를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급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 발급절차의 개선이 필요가 있다. 또한 혹시나 경직된 영사관할지역으로 인해 비자발급 신청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될 것이고, 나아가 영사업 무량에 따라 영사관별 1일 비자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표 7〉 비자발급 규제 개선 방안

개선과제	주요내용	방한 수요효과
비자발급서류 간소화	국제신용카드(골드 등급이상) 소지자에 대한 신청서류 간소화.	비자신청의 편리성으로 방한 수요 증가.
영사 관할지역 완화	학생단체 및 단체관광(C3)에 대하여 영사관할지역 이외의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비자신청의 편리성으로 방한 수요 증가.
단체 규모축소	단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	가족단체 등 소규모 단체 수요 증가.
일일 비자발급 제한 완화	일일 비자 발급량 제한을 완화. 비자업무 증가로 영사업무 인원 확보가 필요.	방한 수요증가 보다는 비자 획득의 편리성 증진
접수/발급시간 연장	비자 접수 및 발급시간 확대를 통하여 불편 해소. 비자업무 증가로 영사업무 인원확보가 필요.	방한 수요증가 보다는 비자 획득의 편리성 증진

#### 4.2.1. 비자 발급서류 간소화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의 경우 과다한 발급서류로 인하여 방한 비자 신청 단계에서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일정 자격을 가진 중국인에 대하여 발급 서류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

방한 수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신용카드 소지 중국인에 대하여 제출서류 간소화하여야 하는 바이는 중국의 경우 재직증명, 회사영업허가 증명을 직원이 발급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 8〉 비자 발급서류 간소화 개선

개선 분야	비자/여권 종류	현재 상황	개선제안내용
제출서류 간소화	관광비자 (단체)	여권/사진/신분증 COPY/호구책 COPY/재산증명(통장사본)/임시 거류증	국제신용카드(골드이상) 소유자는 여권/ 사진만으로 간소화(호주/싱가포르 실시 중)
	관광비자 (개인)	여권/사진/US10만불 이상의 재산 증명(은행잔고 OR 부동산보유증명)/ 이력서/관광계획서/사업자등록증COPY	

#### 4.2.2 영사관할 지역 완화

〈표 9〉 영사관할 지역 완화 개선

개선 분야	비자/여권 종류	현재상황	개선제안내용
영사관할 지역완화	관광비자(단체)	<p>ⓐ 해당 영사관 관할 지역 이외의 타지역 거주자 (본적지기준)가 포함된 경우 비자신청이 불가하거나,</p> <p>ⓑ 비자신청자중 관할지역 거주자(본적지기준)가 일정비율이상(예:北京영사관 80%) 일 경우 비자신청가능</p>	<p>영사관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어도 비자 가능 토록 변경</p> <p>(ⓐ전국 판매망을 가진 여행사의 직원 및 대리점 인센티브관광 유치, ⓑ여러 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단체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사항임)</p>

#### 4.3 정리 중국인 비자 발급제도 주요 개선과제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중국인 비자 발급제도 주요 개선과제

비자발급 개선과제	주요내용		
비자발급 유형확대	외교/공무 여권	외교/공무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베트남 등에서 실시 중)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이국하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했던 자중 국내 불법체류사실이나 범법사실이 없는 경우 (관광통과 무비자 를 일반 무비자로 확대)	
	수시방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제외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빈번한 입출국을 하는 중국인에게 적용하는 복수 무비자 제도를 항공이용 중국인에게 확대	
	국경통과 비자 확대	대만 방문 중국인에게 국경통과 무비자 확대	

비자발급 개선과제	주 요 내 용		
비자발급 유형확대	복수 비자	수시방문 중국인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입국하고, 국내 불법체류사실이나 범법사 실이 없는 경우 복수사증 발급
		국제신용 카드 소지 중국인	항공기를 이용한 수시 입국자 복수 비자 발급 : 선박을 이용한 수 시 입국자와 동일하게 복수비자 발급
	외교/공무 여권	국제 신용카드(골드 등급이상)소지자에게 발급 (싱가포르, 호주에서 시행중)	
	인터넷 사증도입	외교/공무여권 소지자 복수비자 발급	
비자발급 규제개선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인터넷 사증도입	지정 여행사를 통한 인터넷 비자신청 (말레이시아 시행중)
	영사관할 구역 완화	국제 신용카드(골드 등급이상)소지자에게 발급 (호주에서 시행중.)	거주지 이외의 영사관에도 단체관광비자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 V. 결론

### 5.1 중국인 비자 발급제도 주요 개선과제

궁극적으로 중국인 단기 관광방문에 대하여 비자면제를 추진해야한다. 비자면제는 양국의 호혜적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필요에 따라 중국인에 대한 선 비자면제 추진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인 입국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를 한 경우도 있고, 중국도 또한

일본인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 등의 사례가 있기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우선 단기 비자발급 민원 해소 및 단기방문 비자의 단계적 완화 내지는 면제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물론이다.

또한 비자면제에 따른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사전 입국심사제 등 철저한 입국심사 제도 운영과, 자발적 본국 귀환 프로그램, 강제출국 등을 보다 강력히 운영하고, 생체인식 시스템

등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처 및 중국정부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최소화 노력하도록 한다. 비자발급 서류간소화 및 영사관 할 구역 완화는 법적 조치 없이도 즉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5.2 전면적 단기방문 비자 면제시 파급효과

전면적으로 단기방문자에 대하여 비자를 면제할 경우에는 방문객 증가효과가 나타나 2008년 북경 올림픽 기간의 한시적 비자 면제에 따른 단기방문객은 약 99만명으로 추정되고, 2010년은 단기방문객 약 197만명을 포함하여 233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와 향후 3년간(2008년~2010년) 총 \$66.3억의 관광수입이 예상되고, 대 중국 관광수지 적자는 2008년~2010년 동안 \$100.7억 적자에서 \$27.1억이 감소하여 \$73.6억이 된다.

또한 산업파급효과 측면에서는 2008년~2010년의 3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12.3억, 총 산업유발 효과는 \$206.3억, 순 산업유발 효과는 \$192.8억에 달하여 높은 산업 파급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단기 방문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순수 간접세 유발효과도 \$5.5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 단기 방문객 증가는 서비스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2008년부터 2010년간의 중국인 단기 방문객에 의한 고용유발 효과는 연평균 9만3천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3년간 연인원 28만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인 단기 방문객의 유치는 국내 신규 고용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학력 고용창출로 고학력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5.3 전면적 비자 면제 제안

2010년 한중 완전 항공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단기 관광방문객에 대한 북경 올림픽 기간 무비자 입국 시범 허용 이후, 항공 자유화 일정에 맞춰 무비자 입국 확대하는 방

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앞당겨 2009년부터 당장에 단기 관광방문객에 대한 비자면제 확대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단기 관광방문 목적의 중국인 입국자에게 단기(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현행 통과비자(B-2) 제도를 원용한 중국인 무비자 제도를 확대·운영하기로 한다.

우선 1단계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기하여 한시적으로 단기방문객에 대하여 시범실시 (2008.7~12.)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여 2단계로 단기방문 관광 방문객에게 2009년 무비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 출입에 장애가

되었던 관광 비자를 무비자로 허용함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효과가 기대되어 국내 관광수지 개선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산업에의 고용창출로 고학력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비자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비자서비스 질적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자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무비자제도 시행이 촉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한 준비 기간 부족하나 이는 철저한 입국 심사 강화 및 이에 따른 심사인력 확충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리슈핑 & 양이융, '중국 공민 해외 관공비자에 관한 보고', 한국관공공사, 2007
- 이충기, 최혜정, 송학준, '산업연관모델을 통한 관광쇼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경영 학연구], 제 14권, 3호(2005), pp.237-255
- 인천출입국관리소, "출입국통계연보", 각년도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www.koreaemb.org.cn](http://www.koreaemb.org.cn))
- 중국국가여유국([www.cnto.or.kr](http://www.cnto.or.kr)) 관광통계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04", 2004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05", 2005
- 한국관광공사 각종 통계자료
- 한국관광공사,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상반기 '2006 관광수요예측", 2006, 12
-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7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각호

# Research on Improvement of Chinese Tourist

**Hwang, Ho-Won**

Professor, Department of Air&Space Law, Korea Aerospace University

## 【Abstract】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their surge in demands for oversea traveling, 615 million in 2010, 1,590 million in 2020, the experts predict that China i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group of tourists who have ever come from any place in the world's history. Particularly, tacking possibility of change of touring abroad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after the Beijing Olympic, the fact that Chinese people begin to travel outside of China is going to see a tidal wave and the plan to hold Shanghai's EXPO in 2010 into account, China would be the remarkable sight seeing country.

Whereas Korea has a significant gap in number of Korea-China visitor, 1:4.6, Korea is able to take advantages from geological bounds and cultural identities to invest Chinese tourist.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xtensive improvement in Visa system which limits Chines to visit Korea.

Accordingly I suggest to enlarge exempt from Visa in case of short term tourist, beginning 2009. Besides, simplification of Visa system and appeasement policy of consul jurisdiction should be treated overriding matter, and next, improvement of human service which handles issuing Visa is urgently called for. Hence, in my opinion, it is time to expand active partner who issues Visa appropriately and it is required to secure proper consul.

#. Chinese tourist, VISA program(system, process), transit without visa (TWOV), simplification of VISA issue